

‘서울특별시 · (주)더존비즈온’ 전자납부 활성화 사업 공동협력 협약서

서울특별시(이하 ‘서울시’)와 (주)더존비즈온(이하 ‘더존’ 이라 한다)은 ‘서울시’의 지방세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납세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‘서울시’와 ‘더존’이 서울시 지방세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‘더존’의 축적된 정보화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 및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)

본 협약의 당사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역할을 담당한다.

1. ‘서울시’는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활성화 등 납세 편의 서비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협력한다.
2. ‘더존’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서울시 세무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방세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활성화 등 사업을 위해 협력한다.

제3조(공익추구·비정치·비영리의 목적)

본 협약의 당사자는 공익추구의 원칙을 가급적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사업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으로 이용되거나 정치, 종교 또는 영리적 활동 등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배제한다.

제4조(세부시행)

이 협약의 추진을 위해 협약의 당사자는 제2조 각호의 분야별 세부 추진사업을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.

제5조(유효기간)

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며,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(약정내용의 변경 및 해지)

‘서울시’와 ‘더존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부 혹은 전부를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 또는 조례 등 법적구속력이 인정되는 규정의 변경으로 계속적인 업무 협약이 어려운 경우
2. ‘서울시’와 ‘더존’이 문서로 상호 합의한 경우

제7조(보안 등)

‘서울시’와 ‘더존’은 협력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·간접적으로 확보한 상대방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

1.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신의·성실을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.
2.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7월 5일



서울특별시장

박원순을 대리하여
재무국장

하철승

DOUZONE

대표이사

김용우를 대리하여
EBP사업본부장

지용구

제5조(유효기간)

이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며,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2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6조(약정내용의 변경 및 해지)

‘서울시’와 ‘더존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부 혹은 전부를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다.

1. 관계법령 또는 조례 등 법적구속력이 인정되는 규정의 변경으로 계속적인 업무 협약이 어려운 경우
2. ‘서울시’와 ‘더존’이 문서로 상호 합의한 경우

제7조(보안 등)

‘서울시’와 ‘더존’은 협력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·간접적으로 확보한 상대방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

1.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는 신의·성실을 바탕으로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.
2.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7월 5일

DOUZONE

대 표 이 사

김용우를 대리하여
EBP사업본부장

지 용 구

 **서울특별시**

서 울 특 별 시 장

박원순을 대리하여
재무국장

하 철 승